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 제시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5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4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5
3. 주요 조문별 검토	14
1) 정의규정(안 제2조)	14
2)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18
3) 국방전력체계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안 제7조)	21
4)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신설(안 제8조)	24
5) 국방전력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안 제9조), 국방전력사업의 추진 등(안 제10조), 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안 제13조)	26
6)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신속 추진(제13조)	3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정책추진절차·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일관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전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증강·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 수립·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장군의 육성을 도모하며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전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증강해 나가기 위한 국방부장관, 합참·각군 및 관련기관, 방위사업청장 및 국방전력 관련 주체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 전력체계 및 사업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방전력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 관련 주체가 제기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 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선행연구를 거친 후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국방전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국방전력사업 중 방위력개선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추진함(안 제10조).

사. 국방부장관은 구매 또는 연구개발한 국방전력체계 및 핵심기술이 전력목표,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하고,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의 효과적 운영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방전력의 발전에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전력체계는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소속으로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정책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업무수행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의 지속성·일관성·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군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4조(국방부장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방전력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6조(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제7조(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국방전력정책위원회)

제3장 국방전력체계의 효율적 통합 관리

제9조(국방전력체계의 소요제기 및 결정)

제10조(국방전력사업의 추진 등)

제11조(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등)

제12조(국방전력체계의 운영유지 및 처분 등)

제13조(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 추진)

제14조(국방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추진위원회)

제15조(국방전력 전문인력의 양성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1) 개요

□ 제정안은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인 국방전력정책의 정책추진절차·방식 등이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을 적절한 규범체계로 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방전력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국방부훈령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획득·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총 2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체계 발전업무,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국방군수관리 업무, 방위산업 지원, 전시발전업무, 회의·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등의 소요제기 및 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연구개발 및 구매, 시험평가 등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정안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가 방위사업법에 그 근거를 둔 반면,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 훈령에만 규정되어 운영되는 것을 규범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를 아우르는 국방전력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1절 소요제기 및 결정

제2절 소요검증

제3절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등

제4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제5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6절 연구개발 및 구매

제7절 시험평가 등

제8절 전력화단계 평가

제9절 성능개량 등

제10절 전력화지원요소

제11절 분석·평가 원칙

제12절 방위력개선분야 시설사업 관리

제3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 제1절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
- 제2절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 제3절 전력지원체계 획득방안 결정
- 제4절 예산편성 및 집행
- 제5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 제6절 전력지원체계 구매 및 임차
- 제7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 제8절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등
- 제9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4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 제1절 군수품 표준화
- 제2절 군수품 조달관리
- 제3절 장비관리
- 제4절 장비정비

제5장 방위산업 지원

제6장 전시 전력발전업무

- 제1절 기본지침
- 제2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 제3절 전시 사업관리
- 제4절 전시 예산운영
- 제5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7장 회의·위원회

제8장 보칙

2)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의 입법 필요성

-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서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을 말함.¹⁾

국방분야에서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법률을 예로 들면, 인력 및 군 복무 분야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안보 및 통합방위 분야의 「통합방위법」, 비군사적 방위 및 재난 안보 분야의 「민방위기본법」, 국방 과학기술 및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음.

[국방분야 기본법(예시)]

분야	기본법	역할
인력 및 군 복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기본권 보장, 의무, 병영생활의 기본원칙 및 국군의 강령을 정함
안보 및 통합방위	「통합방위법」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해 전·평시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방위체계를 정립하는 기본법적 역할
비군사적 방위 및 재난 안보	「민방위기본법」	군사적 작전 외에 적의 공습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대 조직 및 운영의 기본방향을 규정
국방 과학기술 및 개혁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미래전 환경에 맞춘 군 구조 개편, 국방 운영체계 혁신 등 군의 장기적 체질 개선과 현대화 방향을 선언하는 기본법

- 제정안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과 행정규칙인 「국방전

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 법제실, 2024. 5.

「력발전업무훈령」에 산재한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관리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에 따라 전력지원체계를 국방전력정책에 포함하여 무기체계와 함께 다루는 경우,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통제와 운영 유연성간의 균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방위사업법」은 반복되는 방산비리로 인해 획득의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면서 방위사업청 신설과 함께 2006년 제정되었음.

획득 사업관리는 기존의 훈령에 근거한 수행방식에서 「방위사업법」 제정으로 법령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을 포괄하지만, 방위력개선사업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신규개발·성능개량 등”으로 별도 정의되어 있는 반면,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로 정의되어 있을 뿐, 방위력개선사업처럼 독립된

사업절차로 상세화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방위사업법」 제25조에서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하는 군수품의 조달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종합해 보면, 「방위사업법」이 ‘무기체계 중심의 방위력개선’에 중점을 두고 입법화됨에 따라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 사업처럼 독립된 사업절차가 상세화되어 있지 않고

다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포괄하는 군수품의 조달 시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획득 절차를 운영 중임.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에도 소요제기 및 결정 등 획득 절차 등이 법률 사항으로 규정됨.

이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외의 군수품을 포괄하는 전력지원체계의 광범위성, ‘전력증강’보다는 장비 생활, 부대 운영, 정비·보급, 시설·지원장비 등 ‘전력운영 및 군수지원’에 치중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운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방위사업법」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② 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무기체계와 같이 획득 절차 등에 대해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현행대로 국방부훈령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방위사업법」 등 현행 관련법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사항임.

제정안의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국방전력정책위원회 등이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방중기계획,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과 유사한 내용과 기능을 하는바,

제정안의 기본법적 기능을 고려할 경우 현행의 관련법 상의 계획 등과 조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현행 관련법 상의 유사 계획 및 위원회]

「제정안」	현행 관련법
제6조(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7조(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등)	「방위사업법」 국방중기계획
제8조(국방전력정책위원회)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추진위원회

3) 관계부처 의견

- 국방부는, 국방전력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본 제정안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나, 무기체계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존 조항과 중복 또는상충되어 제정법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기존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 시, 두 개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가 극히 일부거나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정법상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개념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법안의 ‘국방전력정책위원회’는 국방전력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또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합

융복합사업추진단은 국방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보이며, 그 설치 근거를 개별 법률에 두는 것보다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1) 정의규정(안 제2조)

□ 안 제2조는 ‘국방전력체계’를 국방전력정책을 토대로 하여 국방전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거나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제반수단으로 정의하고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융복합지능화전력 체계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는 현행의 「방위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으로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적 성격의 전력체계로서 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전력정책”이란 국방전력(國防戰力)의 효율적인 발전 또는 증강을 목적으로 수립·추진하는 제반 정책을 말한다. 2. “국방전력체계”란 국방전력정책을 토대로 하여 국방전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거나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제반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 나. “전력지원체계”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를 말한다. 다.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적 성격의 전력체계로서 가목 또는 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전력사업”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발굴·기획·결정, 획득(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운영유지·

폐기 등을 행하는 제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제2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나. “전력지원체계 획득사업”이라 함은 제2호나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다.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이란 제2호다목에 따른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의 획득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현행 국방분야 법률에서는 제정안의 국방전력과 유사한 용어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예를 들어,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로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과 「방위사업법」에서는 “국방전력”, “방위력” 등을 주로 물적 자원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력체계”를 인적자원, 물적자원, 제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이 국방전력, 방위력, 전력체계 등 유사한 용어들이 국방분야 법률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본법 기능을 전제로 한 제정안의 취지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력과 관련된 용어의 체계적 정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분야 법률상 국방전력 유사 용어 용례]

구분	정의	비고
제정안 “국방전력체계”	국방전력정책을 토대로 하여 국방전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거나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제반수단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방위사업법」 “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	무기체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전력체계”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반시설

□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방인공지능법안」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하게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등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이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를 무기체계등과 구분되는 체계로 보고 있는 반면, 「국방인공지능법안」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별도의 독립된 개념이 아닌 기존의 무기체계등에 적용되는 기술로 보고 있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부승찬의원 대표발의, 2216355)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적용) ① 국방부장관등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이하 “무기체계등”이라 한다)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도입 및 운용하는 경우로서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방인공지능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등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체계는 일반적으로 기존 체계에 지능화 요소가 접목된 형태로 구현되어 대부분이 ‘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 정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융복합지능화 전력체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정안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도 제정안 제13조에 따르면 별도 획득절차를 거쳐 전력화하므로 군수품에 해당되는 바, 이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게 될 경우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률과 상충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하여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하여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전력정책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전력체계 및 국방전력사업의 총수명주기적 통합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국방전력정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재원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국방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국방 분야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국방 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과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비교해 보면, 제정안이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를 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구매사업을 작성사업에 추가하며 총수명주기적 통합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항목에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vs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비교]

구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작성 대상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u>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u>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작성 사업	연구개발 <u>구매</u>	연구개발
작성 항목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u>총수명주기적 통합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u> 예산확보 및 재원배분 등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3.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제정안의 총수명주기적 통합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정안대로라면 안 제6조제3항에서 기본계획의 국방 분야 타 법률에 대한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 배제되지는 않고 존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두 기본계획 간의 조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중이고 제정안에 따른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작성항목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국방전력정책위원회에 대해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국방전력체계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안 제7조)

- 제정안 제7조는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방위사업법」 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의 규정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하여 국방전력체계 및 사업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여 제8조에 따른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확장하여 무기체계는 물론 전력지원체계, 제정안 상의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를 포괄하는 국방전력체계 전체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 방위력 개선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고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은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하므로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달리 국방부장관 주관 위원회 심의·조정 절차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있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3조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계획에는 방위력개선사업분야는 물론 전력운영분야를 포함하고 있음.³⁾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제정안의 국방중기계획과 방위사업법의 국방중기계획이 병립하게 되는바 두 계획 간의 조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은 국방부장관 주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의 중복 심의·조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3)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임.

4)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신설(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국방전력정책위원회) ① 국방전력의 발전 또는 증강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방전력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중기계획 수립의 추진 및 방향성에 관한 사항 4. 국방전력정책의 자원 배분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 방위사업법 제9조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⁴⁾

4) 「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제정안의 국방전력정책위원회와 방위사업법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병립하게 되는바 두 위원회 간의 조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방위사업청은 국방전력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기존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과 매우 유사한바, 중복 심의·조정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제정안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방전력체계 소요제기 및 결정(안 제9조), 국방전력사업의 추진 등
(안 제10조), 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안 제13조)

□ 안 제9조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방전력 관련 주체가 제기한 국방 전력체계의 소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방위사업법」 제15조⁵⁾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는 소요 결정 후 국방전력사업의 추진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면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구매 또는 연구개발한 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5)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의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군별로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 결정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9조(국방전력체계의 소요제기 및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전력관련 주체가 제기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방위사업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방전력체계의 소요 제기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방전력사업의 추진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행연구를 거친 후 구매 또는 연구개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국방전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시·사변·해외파병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국방전력체계의 소요가 선행연구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전력사업 중 방위	제11조(국방전력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구매 또는 연구개발한 국방전력체계 및 핵심기술이 전력목표,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험평가의 기준·항목·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력개선사업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 국방전력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방법 및 합리적 재원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조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국방전력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	--

□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훈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무기체계와 같이 소요제기·결정 절차, 소요 결정 후 추진방식, 시험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외의 군수품을 포괄하는 전력지원체계의 광범위성, ‘전력증강’보다는 장병 생활, 부대 운영, 정비·보급, 시설·

지원장비 등 ‘전력운영 및 군수지원’에 치중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운영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방위사업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만 규정된 전력지원 체계에 대한 소요제기·결정 절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기·결정 절차,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방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시험평가는 「방위사업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에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임.

6)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신속 추진(제13조)

- 제정안 제13조는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사업관리를 위한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대상체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2. 국방중기계획 반영 3. 소요의 검증 및 결정 4. 선행연구 5. 연구개발 및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6. 시험배치 및 전력화 ② 국방부장관은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대상체계의 소요 및 개발, 사업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소속으로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신속 추진 등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 결정부터 체계개발, 시험평가, 양산 및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통상 5년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인 반면, 인공지능기술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기존의 단계적 획득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개발 완료 시점에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거나 급변하는 작전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에 따를 경우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의 적시성 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겠음.

-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방인공지능법안」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하게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등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방인공지능법안(유용원,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제2216355호)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적용) ① 국방부장관등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이하 “무기체계등”이라 한다)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도입 및 운용하는 경우로서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방인공지능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등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유무인복합체계, AI등)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획득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67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제2216864호)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679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제2216864호)
제6조(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분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무기체계 획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소요결정 또는 신속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기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의 결정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이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 한다) 소요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개략적인 배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반복주기 작업을 통하여 증분적(増分的)·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이하 “신속적응형 연구·개발”이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지정 및 추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직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보이는 제정안의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의 경우 그 설치 근거를 개별 법률에 두는 것보다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조직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임.